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 신설 등	3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26.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2조의3제5항),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마약류관리에</u>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u>마약류관리에</u>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u>마약류관리에</u>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u>마약류관리의</u>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신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u>----- 2.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u>----- 3.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u>----- 4.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u>----- ④ (현행과 같음) ⑤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u>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

-----.

⑦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

	<u>을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u> <u>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u> <u>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생략)</u>	<u>제51조의4(마약퇴치의 날) (현행 제51조의3과 같음)</u>
<u>제51조의4(실태조사) (생략)</u>	<u>제51조의5(실태조사) (현행 제51조의4와 같음)</u>
<u>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생략)</u>	<u>제51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현행 제51조의5와 같음)</u>
<u>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생략)</u>	<u>제51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현행 제51조의6과 같음)</u>
<u>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u>	<u>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51조의7과 같음)</u>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u>

	<u>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u> <u>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u> <u>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u> <u>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생략)</u>	<u>제51조의4(마약퇴치의 날) (현행 제51조의3과 같음)</u>
<u>제51조의4(실태조사) (생략)</u>	<u>제51조의5(실태조사) (현행 제51조의4와 같음)</u>
<u>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생략)</u>	<u>제51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현행 제51조의5와 같음)</u>
<u>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생략)</u>	<u>제51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현행 제51조의6과 같음)</u>
<u>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생략)</u>	<u>제51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현행 제51조의7과 같음)</u>
<u>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u>	<u>제51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51조의8과 같음)</u>
※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의3제5항: 관리계획 신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함)”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개정안의 “관리계획”은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사례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바, 현행법 제2조의3제4항1)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2조의32)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마약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제출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함.

- 식약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있음.

□ 마약류 관련 업무는 다부처 소관 사항으로서 식약처,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국무총리 산하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체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통합적인 업무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의 관리계획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사례관리”는 복지부 소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이 모두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1조의3: 마약류 중독자 보호·지원 사업 신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중독자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 중독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적인 질환의 일종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 또한, 현행법 제51조의2제5항3)에 따라 사회재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현재에도 내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재활 대상자 정보 및 이력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통합적인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관기관(법무부, 검찰청, 치료보호기관 등)과 정보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 사례로서 알코올 중독의 경우 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⁴⁾에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운영 중이고, 도박 중독의 경우 문체부 산하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⁵⁾에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GPIS)”을 운영하고 있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상담·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소속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다만, 개정안은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지 지원과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현행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 행 법	개 정 안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u>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지</u>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u>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상담·홍보</u> 등 사업(이하 “<u>사회재활사업</u>”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u>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u> 사업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마약류기본계획에 마약류 관리뿐 아니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관리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까지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관리 및 재활 등 관련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세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의 관리계획은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립하고 있는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4